

제18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3. 9. 11.(서면심의)

안 건 명

- 광암 고도증설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발주심의)

심의결과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주요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을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가설구조물의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시행할 것으로 수정
- 4. 건축시설 라향. 건축물의 실별 용도 및 면적계획은 사전 발주처의 사용 목적 및 내실 근무자 환경에 따라 소요 면적을 사전에 제시하기 바람(p.36)
- 제4장 실시설계/ 5.기계설비/가. 일반사항 내용 추가
 - 주요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 방법, 성능보증 관련 사항 작성
 - 주요 기자재 개별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계획 작성
- 제3장 기본설계 / 7. 조정시설에서 다음 사항 추가(p.38)
 - 국내 유사사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 토양(식생기반) 및 기후여건 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개량, 수목 선정 등 식재 설계 방향을 설정
 - 기존 수목 중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식

붙임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185차 광암 고도증설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시공	1. 가설구조물의 검토 (1)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시행할 것으로 수정 ⑤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추가	P.8
	2.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나.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 IOT기반 휴대형산소농도측정기, 스마트안전장비(근로자 위치 파악센서, 중장비 접근감지장비, 가스 등 유독물질 측정장비 등) 등 본과업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및 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P.12
	3. 기타 조사사항 가. 건설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대로 수정	P.27
	4. 건축시설 아. 건축물의 출입구는 이상호우로 인한 침수를 대비하여 기계, 전기 시설물 보호를 위한 침수판 등 방지사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P.36
	5. 기타사항 다. 공사기간 동안 기존급수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급수공급계획(부단수 공법 포함)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대로 수정	P.39
	6. 최종성과품 납품 시공계획서 10부 성과품 목록 추가	P.81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9월 5일

심의위원 :

본 검토서는 2023.9.5.(화) 18:00까지 [e-mail\(hjyhgu@seoul.go.kr\)](mailto:hjyhgu@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185차 광암 고도증설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상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페이지 : 수정 요망 (아래첨자 사용) 산소 및 유해가스(H₂S, CO₂, CO, CH₄ 등)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₂S, CO₂, CO, CH₄ 등) 농도 측정- 기타 이견 없음	
종합의견	<p>(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3년 9월 5일

심의위원 :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본 검토서는 2023.9.5.(화) 18:00까지 e-mail(hjyhgus@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185차 광암 고도증설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축계획	<p>1. 13페이지 : 14.과업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금액변경 사항 추가 작성 검토하길 바랍니다.</p> <p>2. 36페이지 : 4. 건축시설 라향. 건축물의 실별 용도 및 면적계획은 사전 발주처의 사용 목적 및 내실 근무자 환경에 따라 소요 면적을 사전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종합의견	<p>조건부채택</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3년 9월 5일

심의위원 :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본 검토서는 2023.9.5.(화) 18:00까지 [e-mail\(hjyhgu@seoul.go.kr\)](mailto:hjyhgu@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185차 광암 고도증설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플랜트	<p>1.제1장 일반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다.과업수행계획서제출/1)항 내용추가 (9) 설계품질 보증 계획</p> <p>2.제1장 일반사항/3.과업범위/다.과업기간/2)항 내용 수정 및 내용 추가 (당초)</p> <p>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p>(변경)</p> <p>라. 계약기간 변경 및 중지</p> <p>1) 계약기간 변경</p> <p>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플랜트	<p>- 과업의 추진시 각종 인.허가 지연 등</p> <p>-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p> <p>2) 용역중지</p> <p>-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3.제1장 일반사항/ 13.하도급사항 내용추가</p> <p>(당초)</p> <p>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p> <p>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p> <p>라. 하도급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p> <p>(변경)</p> <p>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p>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플랜트	<p>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예정공정표 -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 내역서 <p>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p>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마. 책임한계</p> <p>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p> <p>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p> <p>4. 제4장 실시설계;3.정수시설/라. 중간가압장 내용추가</p> <p>6) 가압펌프는 수리계산결과에 의해 운전양정을 계획해야 하며 통합제어실에서 감시 및 원격조작 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제4장 실시설계/ 5.기계설비/가. 일반사항 내용 추가</p> <p>14) 주요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 방법, 성능보증 관련 사항 작성</p> <p>15) 주요 기자재 개별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계획 작성</p>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플랜트	<p>6. 제6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1.일반사항 내용추가</p> <p>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등)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p> <p>7. 제6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4.특기사항/아. 예정공정표작성 내용추가</p> <p>3) 예정공정표는 작업 개시일과 종료일, 설계검토 및 승인 일정, 인·허가 사항 일정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다.</p>	
검토의견	조건부 가결	

2023년 9월 5일

심의위원 :

본 검토서는 2023.9.5.(화) 18:00까지 e-mail(hjyhgu@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185차 광암 고도증설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수장 운영과 동시에 증설 및 재정비공사의 진행으로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과 안전한 시공을 위한 작업프로세스 작성(전 공종별 선·후공정, 작업시 주의 및 안전관리 등 포함)- 설비증설에 따른 소비전력용량 검토- 신설과 재정비의 각 설비 제원 비교 및 상호 호환성 검토- 전력/계측분야 접지공사관련 기존설비의 접지저항 및 관리상태 점검 검토(접지공사 추가 시공여부)- 부식성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설비는 내식성 있는 자재를 선정(약품투입실, 밀폐공간 등)- 기 타(과업내용서)<ul style="list-style-type: none">• P17 “(19)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19)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수정, 5) 기타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자원부) 및 (4) 내선규정/배전규정 ~ 약관(한국전력공사) 문구 삭제(판단기준, 내선규정 폐지)• P18 “5) 전기, 통신에 관련된 법률”<ul style="list-style-type: none">(1) 전기사업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전기안전관리법 추가	
종합의견	<p>(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3년 9월 5일

심의위원 :

본 검토서는 2023.9.5.(화) 18:00까지 [e-mail\(hjyhgu@seoul.go.kr\)](mailto:hjyhgu@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185차 광암 고도증설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조경	<p>1. P24 / 제2장 조사업무 / 2.조사항목에서 다음 사항 추가</p> <p>(1) 현황수목 및 지장수목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수목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 가능한 보존·이용하는 것을 원칙▪ 지장수목은 수형이나 노후정도, 해당지역의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한 굴취의 난이성, 해당수목의 병해충 감염정도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 수목과 제거수목을 선정 <p>2. P38 / 제3장 기본설계 / 7. 조경시설에서 다음 사항 추가</p> <p>(1) 국내 유사사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p> <p>(2) 토양(식생기반) 및 기후여건 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개량, 수목선정 등 식재 설계 방향을 설정</p> <p>(3) 기존수목 중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식</p> <p>3. P59 / 제4장 실시설계 / 8. 조경시설에서 다음 사항 추가</p> <p>(1) 가. 식재기반조성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성토시 수목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p>(2) 나. 배수시설에서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급수, 관수시설 계획</p> <p>(3) 다. 식재설계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역의 생태적 조건, 식재 위치의 기반 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 시설물과의 관계, 적정 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분석을 행한 후 대책수립 및 설계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9월 5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제185차 광암 고도증설 및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	<p>1. 10. 설계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 다음의 내용으로 보완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심의 ~ ⇒ 가.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설계VE 검토,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 나.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단계 전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자문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VE 검토(신기술 특허공법 또는 특정제품 선정 전), 기본설계 완료시점(설계VE 검토 이후)에 설계심의, 공사 발주 전,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2. p.61) 11. GB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은 별도 용역발주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본 과업내용서에는 삭제하기 바람</p>	
전기,통신	<p>3. 적용기준 및 시방서(p. 16)에 다음 내용을 수정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내선규정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p>4.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p. 54)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에 대한 각종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기계설비	<p>(과업내용서 : 실시설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 <p>5. 펌프 설계 시 정격출력 내에서 제시된 토출량과 양정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6. 펌프 설계 시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효흡입수두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p> <p>7. 펌프 및 배관 설계 시 수충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p>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조경	<p>8. 제3장 기본설계 (38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조경시설 → 조경계획 - 바. ~ 조경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배수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바. ~ 조경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배수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되 결빙 및 동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추가) 사. 조경시설물은 이용 대상과 목적(용도),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 정수장의 특수성을 감안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도입하여야 한다. <p>9. 제4장 실시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조경시설 → 조경설계 (59p) - "다. 식재설계" ~ "바.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를 구분하지 말고 유사 내용을 병합하여 식재계획으로 일괄 작성 - (추가) "인공지반 녹화 설계"와 "시설계획"(근무자 휴게공간) 항목 추가 ⇒ 과업내용은 설계용역관리편람(조경편) "시설물 설계(81~91p) 참조 - 13. 설계도서 작성 내용 중 용어수정 (65p) ⇒ 조경설비 → 조경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9월 일

심의위원 :